

놀이상담연구소 운영규정

제정 : 2014.07.01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“놀이상담연구소” (이하 “본 연구소” 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소재) 본 연구소는 대원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유아교육과를 주축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 발생 환경변화에 따라 제천시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영아, 유아, 아동, 청소년의 정서행동과 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의 건강한 정신 및 발달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심리검사
2. 놀이치료(모래상자 치료 포함)
3. 미술치료
4. 인지행동치료
5. 언어치료
6. 인지학습치료
7. 사회성 향상 중재 프로그램
8.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

제5조(조직) ① 연구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본 연구소를 대표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제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직원 및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6조(업무내용) 본 연구소의 업무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와 연구를 병행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영아, 유아, 아동, 청소년 및 부모대상(이하 “대상자” 라 한다)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실시 : 기본정보, 의뢰사유 및 치료기대, 가족관계 및 특성, 생육사, 발달사, 양육환경 등 면접지에 근거한 상담, 심리검사,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분석, 사례개념화, 치료목표 및 치료전략, 치료실시, 평가
2. 사례별 치료설계모델 개발
3.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피드백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놀이상담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② <삭제 2020. 03. 01.>

③ <삭제 2020. 03. 01.>

④ <삭제 2020. 03. 01.>

제8조(재정)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각 기관의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>

②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(준용)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칙, 학칙시행세칙 등 제규정을 준용한다.

<개정 2021.12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